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73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 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21	인요한의원	2024. 7. 31.	2024. 11. 14.
	5844	소병훈의원	2024. 11. 25.	2025. 1. 14.

- 나.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 심사제2소위원회(2025. 2. 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2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1.) 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 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 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구급차를 설계·제작하도록 하면서, 구급차의 형태·표시·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응급상황 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석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과의 구획 칸막이에 간

이침대가 바로 붙어 있는 상황으로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구급차를 설계·제작하는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 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신설).
- 나. 5년마다 응급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3조의7 신설).
- 다. 구급차 내의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 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 략) 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 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 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 획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u>설>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 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 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구급 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 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ㆍ 제작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 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